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06월 11일

조촌동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이 *현	이 *현 1975-11-20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안2길 (조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5-30